### 경제협력사업 보험 취급기준

[시행 2017. 12. 27.] [통일부고시 제2017-2호, 2017. 12. 27., 일부개정]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574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은 남북협력기금의 경제협력사업 보험(이하 "경협보험"이라 한다)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업무의 취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경협보험 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기금관련법규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종목) 경협보험은 다음 각 호의 손실을 대상으로 한다.

- 1. "지분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 또는 주식을 취득한 후 피투자회사등의 계속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원금 또는 배당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2. "대부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취득방식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 후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 3. "권리등 투자보험"은 남한주민이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북한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한 후 취득대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의 회수 불능 또는 회수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기금"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을 말한다.
- 2.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 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한다.
- 3. "기금관리규정"이라 함은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을 말한다.
- 4. "약관"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소멸시까지 기금과 보험계약자간의 일반적·표준적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경협보험약관을 말한다.
  - 가.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
  - 나.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
  - 다. 권리등 투자보험 약관
- 5. "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남한주민(이하 "경협사업자"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 "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을 투자비율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분배받기로 하거나 투자 금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받기로 하는 행위로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의 2에 따라 신고의 수리를 받은 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6. "지분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북한지역에 설립된 또는 설립중인 피투자회사등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출자총액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이하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투자한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지분의 추가 취득을 포함한다.
  - 나. 경협사업자가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100분의 2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 피투자회사의 대표, 이사, 기타 경영의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파견한 경우에도 본호의 투자로 본다.
- 7. "대부등 투자"라 함은 이미 지분투자의 형태로 경협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협사업자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 전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 8. "권리등 투자"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것
  - 나. 북한지사(지점과 사무소 포함)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을 반출하는 것
- 9. "투자금"이라 함은 지분등 투자의 경우 지분등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원금을, 대부등 투자의 경우 대부등 원금을, 권리등 투자의 경우 권리등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을 각각 말한다.
- 10. "투자송금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 가. 지분, 대부등 및 권리등의 투자금(유상증자를 위한 투자원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금하거나 반출한 날
  - 나. 무상증자인 경우에는 무상증자일
  - 다. 선행투자자금(기술지도, 노하우 등 용역을 제공하거나 피투자회사등 설립이전에 자금을 송금 또는 물품의 반출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행투자자금이 피투자회사등의 지분등에 전입된 날
- 11. "경제특구지역"이라 함은 개성공업지구 또는 기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2. "북한일반지역"이라 함은 제11호 이외의 북한지역을 말한다.
- 13. "제3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을 제외한 국가 또는 지역 등을 말한다.
- 14.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다음 각목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가. 지분등 투자의 경우에는 지분의 투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
  - 나. 대부등 투자의 경우에는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
  - 다. 권리등 투자의 경우에는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
- 15.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16.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 17. "비상위험"이라 함은 북한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환거래 제한·금지, 전쟁·혁명·내란·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 남 북당국의 사업중단 조치 등 보험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 능하게 될 위험을 말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조(보험계약의 제한)** ① 보험계약대상의 거래당사자가 기금관리규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을 제한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남한주민
    - 가. 보험계약자가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경우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중인 경우
    - 다. 보험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보험계약을 2회 이상 해지한 경우
  - 2.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비상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3. 피투자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계약제한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사고다발 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 보험금액, 보험기간 등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제출서류)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 1. 매 회계연도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 2. 필요한 경우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의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 실사보장각서. 단,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
-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북측 투자계약상대방 명의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에 한한다). 단,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담보위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1]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보험계약자가 선택한다. 다만, 보험기간동안 계약 해지 사실이 없고 보험료 연체사실이 없는 등 계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액과 보험금액) ① 보험가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지분등 투자보험: 지분의 취득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
- 2. 대부등 투자보험: 대부원금 또는 약정이자
- 3. 권리등 투자보험: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의 평가금액
- ② 보험금액은 제1항의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금액이 기업별 보험계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한도를 보험금액으로 한다.

제10조(보험료) 보험료율은 교추협 의결을 거쳐 별표2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2장 보험계약 신청 및 승인

**제11조(보험계약 신청)**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에 보험계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2조(심사)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 신청을 받은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제13조(승인) ① 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계약체결 승인여부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승인여부 내용을 보험계약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을 승인하는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신청자에게 보험증서와 별표 3 내지 별표 5의 해당 약관을 교부한다.
  - ③ 제1항의 보험계약신청자에 대한 보험계약 승인 통보는 보험계약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이 거쳐야 하거나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15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승인통보 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증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 ① 당해 투자의 증자 이전에 투자분 전액에 대해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증자 등(유무상증자, 사채 및 채권의 증액, 권리등의 추가취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신청할수 있다.
  - ② 제1항의 증자 등에 대한 신청은 증액관련 협력사업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은 후 당해 경협사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증자 이전 투자분의 보험계약신청시 제출된 자료가증자분 내용심사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 제15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를 실시하고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②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제6조 1호에 따라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관계 성립또는 증액되는 보험관계 성립금액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한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내용이 기금관련법규, 보험계약체결 내용에 부합하고 제5조에서 정한 보험계약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 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⑥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16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통지후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서 규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체결 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임개시일은 투자송금일로, 보험계약체결 전 투자금액에 대한 보험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체결일로 각각 소급한다.

- ② 보험계약자가 제21조에 규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실효의 인을 날인하고 약관의 효력은 책임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실된다.
-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 당시에 이미 담보위험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통일부장관, 기금수탁관리자 및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부보율) ① 부보율은 아래 각호와 같다.

경제특구지역: 100분의 90
 북한일반지역: 100분의 70

② 제1항 부보율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보율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8조(보험금액의 감액)** ① 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대하여 아래 각호의 경미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액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검토하여 감액한다.

- 1. 대부원리금의 상환
- 2. 권리, 설비, 자산의 감가상각
- 3. 최초의 보험금액 이내에서 대부투자금액과 지분투자금액의 변경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험금액을 감액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9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거나 하고자하여 보험계약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15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보험계약해지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통일부장관은 보고서 접수후 15일 이내 방침을 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 1. 경협사업의 북측투자계약상대방 변경
- 2. 경협사업 지역의 변경(단, 경제특구지역내 변경은 제외)
- 3. 경협사업의 중대한 사업내용 변경(보험금액의 증액, 보험기간의 연장)
- 4. 기타 제2항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의 변경
- ② 보험계약자가 경협사업에 관하여 아래 각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했거나 하고자하여 보험계약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15일 이내에 방침을 결정하고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 1. 보험계약자 및 피투자회사의 상호 및 주소 변경
- 2. 보험금액 증액 없이 보험가액만 증액하거나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지분투자보험금액과 대부투자보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3. 대부 등 투자의 경우 원금 및 이자상환 조건의 변경
- 4.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신청권의 양도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 5. 기타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임한 사항의 변경
-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0조(다른 계약의 통지)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한 다른 계약 등의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제3장 보험료 납부

- 제21조(보험료 납부) ① 보험관계 성립을 통지한 경우의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보험료(추가보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1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이하 이조에서 "2차 납부기일"이라 한다)까지 납부하도록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은 상실된다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 ③ 보험계약자가 제2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체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한다.
- 제22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선취한다. 다만, 보험료 납부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받는다.
  - ② 최초 보험료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그 분기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받는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6월이되는 날(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은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관계 성립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료의 105%를 받는다.
  - ③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후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는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분기별 보험료 납부통지를 분기 초일에 한다.
- 제23조(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의하여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게 된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보험료 환급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4장 보험금의 지급

- 제24조(보험금 지급업무 적용원칙) 경협보험 보험금 지급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역보험 취급기준」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지급신청 유예기간)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에 경협보험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수 있다.
- 제26조(가지급금) 경협보험 보험금의 가지급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 제27조(피투자회사등의 평가) 피투자회사등의 평가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하여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계서류와 자산목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기초하여 가치("장부가기준 자산가치법")를 평가토록 한다.

- 제28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사업이 재개되지 않은 경우 손실액 산정) 손실액은 약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손실액 계산시 차감토록 하고 있는 사고직후 사고지분·주식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 평가액에 대하여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관리 및 대위권행사를 통해 회수토록 한다.
- 제29조(최저 보험금) 보험계약자와 연속 3년이상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피투자회사등의 잔존가치로 산정된 보험금이 아래 각호의 최저보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최저보험금을 지급한다.
  - 1. 연속 3년 : 보험금액의 1%를 곱한 금액
  - 2. 연속 3년 이후 : 매년 보험금액의 0.3%를 곱한 금액
- 제30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손실액 산정) ① 비상위험에 의한 사업 정지후 보험금 지급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손실액으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보험성립금액을 한도로 한다.
  - 1. 지분등 투자의 경우 : 직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사업 정지기간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률, 이하 같음)
  - 2. 대부등 투자의 경우 :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
  - 3. 권리등 투자의 경우 :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 없음
  - ② 제1항의 손실액 평가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사고발생일로부터 최근연도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 서류를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 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성립된 경우 이를 반영한다.
- 제30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①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지분, 사고원금, 사고권리 등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지분, 사고원금, 사고권리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등으로 대위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다(대위권행사와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하에서 "대위권 등을 행사한다"고 함). 이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기금과 약정서를 체결한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표6]과 같다.
  - ② 기금은 제1항의 대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③ 기금은 제28조에 따라 손실액에 대한 보험금 지급 후 사업이 재개된 경우에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반납할 보험금은 약관 제5조의 보험금에서 사업정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30조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반납 요청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대위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회수하거나 제3항의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⑥ 제3항에 따라 반납 요청을 받은 보험계약자 중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반납기한 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사업포기 통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한다.

### 제5장 기타 사항

- 제31조(보험료 산정시 적용환율) ① 제2장 내지 제4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 정하여 수납한다.
  - ② 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 책임개시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 ③ 반출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환율은 반출일에 실제 적용된 환율로 한다.
  - ④ 결산서류를 근거로 하여 보험관계를 성립하는 경우에는 결산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 제32조(연체요율) ① 이 기준 및 약관에 의한 연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1. 연체기간 1년 이내 : 국고채 유통수익률 + 1%
  - 2. 연체기간 1년 초과 ~ 1년 6월 : 국고채 유통수익률 + 3%
  - 3. 연체기간 1년 6월 초과 : 국고채 유통수익률 + 6%
  - ② 제1항의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사업중단기간(회수시) 또는 지급지연기간(지급시) 평균 1년물로 한다.
- **제33조(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단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
    - 가.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 나.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 2. 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수점 둘째미만 단수절사
- 제34조(서류제출일의 기준) ① 이 기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이 기준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서류는 지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조항의 단서에서 지연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 제3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칙** <제2017-2호,2017.12.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답보위험의 범위

- 수용위험 :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 월 이상의 송금 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 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해당 경협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I 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불가항력위험 :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숭인된 국 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 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 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별표2, 보험료율

1. 보험금액 50억원 이하 부분의 보험요율

ㅇ 결정 체계 : 기본요율 - 할인율

기본요율 : 연0.5%~연0.8% 할인율 : 기본요율×적용율 중소기업 적용율 : 25%

2. 보험금액 50억원 초과 부분의 보험요율 : 남북교류협력추진협 의회에서 의결한 보험료율 별표3.

##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

# 제[장 총 취

- 제1조(약관의 내용) ①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 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 "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의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 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함)입니다.
  - ② 제1항의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제17조 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으로서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단독으로 또는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함)를 설립하고, 남한주민이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 또는 주식(이하"지분" 이라 함)을 취득하여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이윤(이하 "배당금"이라 함)을 분배받기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지분의 투자원금 또는 지분에 대한 배당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 I.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배분
-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 3.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④ "보험계약"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 약관을 구체화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한 계약, 계약의 체결행위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⑤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 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 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3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다음 각호의 I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 험계약한 지분의 투자원금, 배당금 또는 지분 및 배당금의 상실에 따른 취득 금(취득한 금액 및 취득가능한 금액을 말함)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에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I. 수용위험

- 가, 북한당국에 의한 지분 또는 배당금 청구권의 몰수・박탈
- 나, 북한당국에 의한 피투자회사의 부동산·설비·원자재·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사업수행상 특히 중요한 것의 침해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이에 준하는 사유 포함, 이하 같음)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2. 송금위험

- 가, 취득금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의 I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2월 이상 의 송금불능
  - ㄱ. 북한당국에 의한 당해 취득금의 관리
  - ㄴ, 북한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 다.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 불능
- 나, 상기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후에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의 몰 수
- 3.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 능, 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4. 약정불이행위험 : 다음 각목의 I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 능, 파산 또는 I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수정

- 나, 북한당국이 당해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다만, 동 특별약정은 보험계약체결전에 보험계약자가 기금에 통지하여 기금이 인정한 것에 한함,
- 5. 불가항력위험: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숭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제4조(손실액)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I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 I. 지분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지분(이하 "사고지분"이라 함)의 투자원금과 당해 지분을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중적은 금액
  - 2. 배당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배당금청구권(이하"사고배당금청구권"이라 함. 배당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청구권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청구권에 한함)에 대하여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으로서 아래의 범위를 한도로 함.
    - 가, 배당금의 합계액은 지분의 해당 투자원금 범위 이내
    - 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년도별 배당금은 해당 투자원금의 10 0분의 10 법위 이내

- ② 송금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 I. 지분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지분의 투자원금과 당해 위험으로
  2월 이상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이하"송금불능액"이라 함, 당해 위험발
  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함) 중 적은 금액
- 2. 배당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송금불능액으로서 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나목의 범위를 한도로 함.
- ③ 제I항 또는 제2항의 손실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I. 사고지분 또는 사고배당금청구권에 대해 당해 위험발생 직후에 평가한 금액
- 2. 당해 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

동 금액중 금전 또는 금전채권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금 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취득한 금액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가액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제II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 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일체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이행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을 뺀 잔액, 다만, 본호의 합리적으로 소요된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은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4. 보험계약자가 제II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 5. 보험계약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 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 6. 보험계약자가 제I4조의2를 위반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 7. 당해 송금위험의 발생으로 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금액 [종전의 제6호 에서 이동]
- 8. 당해 송금불능액중 지출한 금액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 ④ 제1항 및 제3항 제1호의 평가한 금액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최근연도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에 한함)에 기초하여 계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단, 최근연도 결산 이후 위험발생 전에 추가 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손실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 1. 사고지분에 대한 평가액은 당해 사고지분에 관하여 피투자회사등이 해

산된 것으로 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보험계약자가 받아야 할 금액

- 2. 사고배당금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은 당해 사고배당금청구권에 관하여 피투자회사등이 해산된 것으로 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아야 할금액.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날수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 제5조(보험금) 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체4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제16조에서 청한 부보율] - 체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② 기금은 제I항에 따른 금액(누계액 포함)과 보험계약한 지분의 투자원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I. 당해 위험 발생 이전의 다음 각목의 취득금
  - 가.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에 따라 취득금이 생긴 경우, 해당 취득금
  - 나.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상실(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에 따른 취득금(송금불능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해당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상실

한 권리등에 대하여 상실 직전 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

- 2. 제4조 제3항 각호의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받아야할 잔여재산분배액이 기금이 정한 최저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험금을 보험금으로 합니다.
- ④ 기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금의 추가지급)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국내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이하 "송금불능취득금"이라 함. 당해 사유 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은 제외함)이 발생한 경우에 기금은 제4조 내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외에 다음 제1호와제2호의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 1.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 2.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취득금에서 송금불능취 득금을 뺀 잔액을 각각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 금
  - ② 제1항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제3조제2호의 송금위험
  - 2. 취득한 금액이 양도 금지된 국채, 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경

- 우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3. 제2호 외에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할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적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양도가능한 취득금(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을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금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에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금이 그 기간의 연장을 숭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 제7조(면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19조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지분, 배당금청구권 또는 취득금 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제II조, 제I2조, 제I3조 제I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 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 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 ② 기금이 제I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 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

다.

-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12조(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지분에 관한 권리, 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액에 대한 권리 등의 행사에 관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제13조(조사에 따를 의무 등)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경협사업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14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자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피투자회사등의 사업년도마다 기금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제14조의2(근저당 설정 등의 사전 숭인 요청 의무) 보험계약자는 지분 또는 이를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사전 숭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등에 보험 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5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5장 보험계약 체결

- 제16조(부보율) 부보율은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90, 북한 일반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부보율 범위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 제17조(보험기간) ① 보험기간은 보험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 I년 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③ 보험기간 연장신청은 보험기간 종료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지받은 후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일후 6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증액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⑤ 보험계약체결 숭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 숭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제19조(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내용에 따라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기금의 보험 책임개시일은 송금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전 기투자분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체결일부터 시작됩니다.
  -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후 경협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기금은 제I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내용을 숭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I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I월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숭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당해 지분의 상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업년도 보험기간 개시일 [월전까지 서면으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 보험료를 받습니다.
-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2회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중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숭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숭인의 효력 상실은 보험기간의 I년 또는 그 단수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개시일부터, 제20조제2항의 숭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22조(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I.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 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 환급

-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율 수 없는 경우 :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숭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제23조(사고발생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제3조의 손실 발생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I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제I항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어 손실발생원인이 소 열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4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I항의 지급신청은 제23조제I항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부터 I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배당금청구권과 관련하여 배당금 지급기일 이전에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로 배당금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의 불능이 확실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손실발생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이 사고발생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이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배당률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의결된 배당률이 있는 경우
- 2. 기타 보험계약자가 배당률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경제협력사업보험취급기준」(이하「취급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지 않습니다.
- I.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 제26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2.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I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③ 제I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7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 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직전년도 순자산 평가액에 대한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사업정지기간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율, 이하 같음)을 손실액으로 간주합니다. 단, 최근연도 결산 이후 위험발생 전에 추가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성립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손실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①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지분 등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지분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등으로 대위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위권행사와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하에서 "대위권 등을 행사한다"고 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기금과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표6]과 같습니다.
  - ② 기금은 제I항의 대위권 등을 행사하여 보험금(연체금, 비용 등 포함)을 회수합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반납할 보험금은 제5조의 보험금에서 사업정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27조에 의해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제3항의 반납기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 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 ⑥ 보험계약자가 기금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5항의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반납기한 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통보한경우에는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사업포기 통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 제7장 채권의 회수

- 제28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통지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 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시한 만료일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제29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 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 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x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② 보험계약자가 제I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제I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 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① 제33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x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② 대위권 행사 대상 자산의 처분대금 중 기금에 우선하여 보험계약자의 선 순위채권자 및 보험계약자가 배당 또는 지급받은 금액이나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연체금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은 금액으로 간 주합니다.

제31조(사고발생통지 후의 이익잉여금의 발생) ① 보험계약자가 제3조 제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 1호 나목 및 제3호의 사유로 사고발생을 통지한 후 피투자회사등에게 이익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을 전액 회수한 것으 로 봅니다. 다만,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지 고 있는 사고주식 등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을 안 날부터 15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기금 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제32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 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 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사고지분, 사고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지분의 취득금,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회수 및 배당금청구권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월 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기금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시에 보험계약자가 가

지고 있던 당해 사고지분, 사고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 급금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장 보 취

- 제35조(특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서류의 제출)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 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 최초 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초에 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 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 2.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다만,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투자계약상대방 명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동의없이 이 약관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 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제38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금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39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 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1. 지분의 취득원금 : 보험계약 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 2. 제4조의 평가 : 위험발생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 3. 제4조 제2항의 송금불능액, 제4조제3항제I호 이외의 각호의 금액, 제6조의 송금불능취득금, 제20조제3항의 보험금액 감액 또는 제32조의 규정된 금액: 해당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 4.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 정된 날의 환율
- 5.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 액": 회수한 날의 환율
- 6. 제I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 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 8. 제I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보험가액, 보험금액: 1,000원미만 단수절사
-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 제40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41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4.

###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

### 제1장 총 취

- 제1조(약관의 내용) ①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 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 금"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의 대북 경제 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함)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 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함)입니다.
  - ② 제1항의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수인을 받거나 제17조의 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 단체, 기타 기구(이하 "피투자회사등"이라 함)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투자회사등의 사채 및 기타이에 준하는 채권 또는 당해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장기대출금에 관한 채권(이하 "대부등"이라 함)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금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 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 I.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배분
-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 3.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④ "보험계약"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 약관을 구체화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한 계약, 계약의 체결행위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⑤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 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3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 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 이자 또는 대부등 및 이자의 상실에 따른 취득금 (취득한 금액 및 취득가능한 금액을 말함)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 게 되는 손실에 대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수용위험

가, 북한당국에 의한 대부등의 원금 또는 이자청구권의 몰수ㆍ박탈

나, 북한당국에 의한 피투자회사의 부동산・설비・원자재・기타 물건에 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사업수행상 특히 중요한 것의 침해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이에 준하는 사유포함, 이하 같음)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2. 송금위험

- 가. 취득금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의 I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2월 이상 의 송금불능
  - ㄱ, 북한당국에 의한 당해 취득금의 관리
  - ㄴ, 북한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 다.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 불능
- 나, 상기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후에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의 몰 수
- 3.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파산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4. 약정불이행위험 : 다음 각목의 I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 능, 파산 또는 I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수정
  - 나. 북한당국이 당해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다만, 동 특별약정은 보험계약 체결전 보험계약자가 기금에 통지하여 기금이 인정한 것에 한함.
- 5. 불가항력위험 :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숭인된 국제법규에 의

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제4조(손실액)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I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 I. 대부등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대부등의 원금(이하 "사고원금"이라 함.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원금에 한함)과 당해 위험에 관련된 대부등의 원금을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2. 이자청구권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이자청구권(이하"사고이자청구권"이라 함. 이자기일이 도래한 청구권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청구권에 한함)에 대하여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 ② 송금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서 제3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 I. 대부등 원금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대부등의 원금과 당해 위험으로 2월 이상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이하"송금불능액"이라 함. 당해위험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함)중 적은 금액
  - 2. 이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송금불능액
  - ③ 제I항 또는 제2항의 손실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습 니다.

- I.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해 당해 위험발생 직후에 평가한 금 액
- 2. 당해 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

동 금액중 금전 또는 금전채권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금 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취득한 금액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가액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취득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제II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일체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이행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을 뺀 잔액, 다만, 본호의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은 손실방지·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4. 보험계약자가 제II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 5. 보험계약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 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 6. 보험계약자가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 금액

- 7. 당해 송금위험의 발생으로 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금액 [종전의 제6호 에서 이동]
- 8. 당해 송금불능액으로 지출한 금액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평가한 금액은 당해 피투자회사등의 최근연도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에 한함)에 기초하여 계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이 손실발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날수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또한, 최근연도 결산 이후 위험발생 전에추가 투자하거나 회수하여 보험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손실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 I. 사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은 피투자회사 등이 해산된 것으로 하는 경우에 당해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해 상환 또는 지급 받아야 할 금액
- 2. 대출금 채권의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에 대한 평가액은 당해 사고원금 또는 사고이자청구권의 채권금액에서 당해 평가시에 회수불능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
- 제5조(보험금) 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체4조에 의한 손실액 - 제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체16조에서 청한 부보율] - 체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누계액 포함)과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I. 당해 위험 발생 이전의 다음 각목의 취득금
  - 가.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에 따라 취득금이 생긴 경우, 해당 취득금
  - 나. 보험계약한 대부등의 원금의 상실(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 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에 따른 취득금(송금 불능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해당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상실한 대부등의 원금에 대하여 상실 직전 평가한 금액 중에 서 많은 금액
- 2. 제4조 제3항 각호의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받아 야 할 잔여재산분배액이 기금이 정한 최저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 험금을 보험금으로 합니다.
- ④ 기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금의 추가지급)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 가항력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국내 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이하 "송금불능취득금"이라 함. 당해 사유 발생 전 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은 제외함)이 발생한 경우에 기금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외에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 1.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 2.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취득금에서 송금불능취 득금을 뺀 잔액을 각각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 금
- ② 제1항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제3조제2호의 송금위험
- 2. 취득한 금액이 양도 금지된 국채, 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경우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환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3. 제2호 외에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할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적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양도가능한 취득금(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을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금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에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금이 그 기간의 연장을 숭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제7조(면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

- 을 지지 않습니다.
- I. 제I9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대부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 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 I.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제II조, 제I2조, 제I3조 제I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 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 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 ② 기금이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 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시에 기금이 서면으

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 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12조(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지분에 관한 권리, 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액에 대한 권리 등의 행사에 관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제13조(조사에 따를 의무 등)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경협사업 및 기타 보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14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자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피투자회사등의 사업년도마다 기금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제14조의2(근저당 설정 등의 사전 숭인 요청 의무) 보험계약자는 대부 또는 이를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사전 숭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등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5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5장 보험계약 체결

제16조(부보율) 부보율은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90, 북한 일반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부보율 범위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17조(보험기간) ① 보험기간은 보험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 [년 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③ 보험기간 연장신청은 보험기간 종료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지받은 후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인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일후 6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증액되는 보험 금액에 대하여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 ⑤ 보험계약체결 숭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 숭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제19조(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내용에 따라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기금의 보험 책임개시일은 송금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전 기투자분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체결일부터 시작됩니다.
  -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후 경협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내용을 숭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에 보험계약자에게 숭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당해 대부등의 상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업년도 보험기간 개시일 1월전까지 서면으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 보험료를 받습니다.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중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숭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숭인의 효력 상실은 보험기간의 I년 또는 그 단수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개시일부터, 제20조 제2항의 숭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22조(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I.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 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 환급

-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율 수 없는 경우 :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숭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제23조(사고발생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제3조의 손실 발생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I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제1항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어 손실발생원인이 소 열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4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은 제23조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③ 대부등 원금 및 이자청구권과 관련하여 기일 이전에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로 동 청구권에 관한 권리행사의 불능이 확실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손실발생에 대하여 서면으로

기금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금이 사고발생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이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경제협력사업보험취급기준」(이하「취급기준」이라 함.)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I.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 제26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2.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I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7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 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사업이 정지되기 전 또는 정지된 기간중 지급기일이 도래된 미회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일부터 사업재개일 전일까지의 기회비용을 손실액으로 간주합니다.
-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①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사고원금 등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원금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등으로 대위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위권행사와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하에서 "대위권 등을 행사한다"고 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기금과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표6]과 같습니다.
  - ② 기금은 제1항의 대위권 등을 행사하여 보험금(연체금, 비용 등 포함)을 회

수합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반납할 보험금은 제5조의 보험금에서 사업정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27조에 의해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제3항의 반납기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취급기준」 제32조의 연체요 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 ⑥ 보험계약자가 기금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5항의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반납기한 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통보한경우에는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사업포기 통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 제7장 채권의 회수

제28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통지후 보험금 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입금 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시한 만료일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제29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x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 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30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① 제33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x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② 대위권 행사 대상 자산의 처분대금 중 기금에 우선하여 보험계약자의 선순위채권자 및 보험계약자가 배당 또는 지급받은 금액이나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연체금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은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제31조(사고발생 통지후의 송금불능액 등의 지출)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통지한 후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 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I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I5 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제32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 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 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사고원금, 사고이자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

- 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대부등의 취득금,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회수 및 이자청구권에 관련된 권리 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월 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기금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시에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당해 사고원금, 사고이자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급금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장 보 취

- 제35조(특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서류의 제출)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 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 I. 최초 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초에 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 2.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다만, 남한주 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투자계약상대방 명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동의없이 이 약관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 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제38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

- 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금은 제I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I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39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 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1. 대부등의 원금 : 보험계약 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 2. 제4조의 평가 : 위험발생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 3. 제4조제2항의 송금불능액, 제4조제3항제1호 이외의 각호의 금액, 제6조의 송금불능취득금, 제20조제3항의 보험금액 감액 또는 제32조의 규정된 금액: 해당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 4.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이 확 정된 날의 환율
  - 5.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 액": 회수한 날의 환율
  - 6. 제I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 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 8. 제I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 정한 환율로 환산

-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I. 보험가액, 보험금액: I,000원미만 단수절사
-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 제40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41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법제처 60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5.

### 권리등 투자보험 약관

### 제1장 총 최

- 제1조(약관의 내용) ① 이 약관은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이하 "기금관련법 규"라 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기금 "이라 함)이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업자(이하 "보험계약자"라 함)의 대북 경제분야 협력사업(이하 "경협사업"이라 함) 또는 북한지사(지점과 사무소 포함)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나 자산 반출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정하는 보험약관(이하 "이 약관"이라 함)입니다.
  - ② 제1항의 경협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제17조의 2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은 것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북한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공업소유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③ 제I항의 북한지사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나 자산 반출에 따른 권리는 반출한 설비나 자산의 소유권 등을 말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보험가액"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반출당시 평가금액(이하 "취득원금"이라 함)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보험금액"이라 함은 보험가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기

금이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한 보험금 지급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권리등"이라 함은 제I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권리 또는 소유권 등을 말합니다.
- ④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이라 함은 직접 회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서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기금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합니다.
- I. 여비(보통운임 및 통상의 체재비). 다만,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는 그 반액을 인정하고 목적이 수개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에 비례하여배분
- 2.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다만,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 3. 기타 회수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 ⑤ "보험계약"이라 함은 기금과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 약관을 구체화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정하고자 체결한 계약, 계약의 체결행위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⑥ "기금관련법규"라 함은 남북협력기금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남 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기타 통일부장관이 남한주민에 대한 보험과 관련 하여 정하는 운영방침 등 제반 법규를 말합니다.

# 제2장 보험금을 지급하는 손실

제3조(담보하는 위험) 기금은 다음 각호의 I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

험계약한 권리등의 취득원금 또는 권리등의 상실에 따른 취득금(취득한 금액 및 취득가능한 금액을 말함)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해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I. 수용위험 : 북한당국에 의한 권리등의 몰수·박탈
- 2. 송규위험
  - 가, 취득금에 대하여 다음 각 세목의 I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2월 이상 의 송금불능
    - ㄱ, 북한당국에 의한 당해 취득금의 관리
    - ㄴ, 북한에서 실시하는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 다.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환거래 불능
  - 나, 상기 가목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후에 북한당국에 의한 취득금의 몰 수
- 3.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하여 권리등의 손 해를 입어 권리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약정불이행위험 : 다음 각목의 I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권리등의 손 해를 입어 권리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 또는 수정
  - 나. 북한당국이 당해 경협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다만, 동 특별약정은 보험계약체결전에 보험계약자가 기금에 통지하여 기금이 인정한 것에 한함.
- 5. 불가항력위험 : 남한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숭인된 국제법규에 의

한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기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 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1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제4조(손실액)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권리등의 취득원금(이하 "사고권리등"이라 함. 북한지사의 활동, 북한에서의 영업활동에 필요한설비나 자산 반출의 경우에는 반출 당시 평가금액을 말함)과 당해 사고권리등을 위험발생 직전에 평가한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제3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 ② 송금위험으로 발생한 손실액은 당해 위험과 관련된 권리등의 취득원금과 당해 위험으로 2월 이상 송금할 수 없었던 금액(이하"송금불능액"이라 함. 당해 위험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을 제외함) 중 적은 금액에서 제3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금액을 뺀 잔액으로 합니다.
  - ③ 제I항 또는 제2항의 손실액을 계산할 때 빼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사고권리등에 대해 당해 위험발생 직후에 평가한 금액
  - 2. 당해 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

동 금액중 금전 또는 금전채권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취득금 관련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취득한 금액을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가액으로, 보험금 지급청구일의 전일까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

득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의 가액으로 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제II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방지ㆍ경감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타 일체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 이행에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을 뺀 잔액. 다만, 본호의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 또는 소요될 비용은 손실방지ㆍ경감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취득한 금액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4. 보험계약자가 제II조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또는 배상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 5. 보험계약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확대 되었다고 인정되는 손실액
- 6. 보험계약자가 제I4조의 2를 위반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
- 7. 당해 송금위험의 발생으로 지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금액 [종전의 제6호 에서 이동]
- 8. 당해 송금불능액으로 지출한 금액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의 평가한 금액은 보험계약자의 권리등 목록, 감정 평가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것에 한함)에 기초하여 계산합니다.

제5조(보험금) ① 보험금은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하되, 보험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체4조에 의한 손실액 - 체7조에 의한 면책대상손실)×체16조에서 청한 부보율] - 체10조의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게 될 것이 확실한 금액

- ② 기금은 제I항에 따른 금액(누계액 포함)과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취득 원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잔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보험금으 로 지급합니다.
- 1. 당해 위험 발생 이전의 다음 각목의 취득금
  - 가.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의 사유에 따라 취득금이 생긴 경우, 해당 취득금
  - 나. 보험계약한 권리등의 상실(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가항력위험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함)에 따른 취득금(송금불능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해당 송금불능액을 공제한 잔액)과 상실 한 권리등에 대하여 상실 직전 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
- 2, 제4조 제3항 각호의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받아야할 잔여재산분배액이 기금이 정한 최저보험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보험금을 보험금으로 합니다.
- ④ 기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을 원화로 지급합니다.
- 제6조(보험금의 추가지급) ① 수용위험, 전쟁위험, 약정불이행위험 또는 불 가항력위험의 발생에 따른 취득금에 대하여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 국 내로 송금할 수 없는 금액(이하 "송금불능취득금"이라 함. 당해 사유 발생 전에 송금할 수 있었던 금액은 제외함)이 발생한 경우에 기금은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외에 다음 제1호와 제2호의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 1.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위험에 대해 산출한 보험금
- 2.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취득금에서 송금불능취 득금을 뺀 잔액을 각각 제4조제3항제2호 또는 제5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 금
- ② 제1항의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제3조제2호의 송금위험
- 2. 취득한 금액이 양도 금지된 국채, 공채 기타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인 경우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당해 유가증권의 상환이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3. 제2호 외에 전쟁, 혁명, 내란 또는 북한당국의 행위로 취득한 금액(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 또는 취득가능한 금액을 금전으로 취득할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적용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양도가능한 취득금(금전으로 취득한 금액을 제외함)을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금전으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에 금전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금이 그 기간의 연장을 숭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제3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손실

- 제7조(면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19조 제2항의 보험 책임개시일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권리등에 대해 발생한 손실
  -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면책할 수 있습니다.
  - I.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나 피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2. 보험계약자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항 및 제23조의 의무이행을 태 만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제8조(보험계약의 해지 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I. 보험계약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 협력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때
  - 2. 보험계약자의 과실, 약관위반, 의무불이행 등
  - 3.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 ② 기금이 제I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사유의 발생 시로 소급하여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장 보험계약자의 의무

- 제9조(보험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신청시에 기금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 및 기타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기금에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다른 계약 등의 통지의무) 보험계약자는 이 약관이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기금 또는 기금 이외의 자와 체결한다른 계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그 다른 계약등을 체결한 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합니다.
- 제11조(손실방지·경감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보험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자는 타인으로부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배상청구권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절차의 수행에 태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12조(지시에 따를 의무) 기금은 손실의 방지·경감이나 채권회수 등을 위해 지분에 관한 권리, 배당금청구권,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액에 대한 권리 등의 행사에 관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제13조(조사에 따를 의무 등)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경협사업 및 기타 보 험계약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사·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에 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이 보험계약자의 업무나 자산에 관하여 조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장표·서류 또는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14조(결산관계서류의 제출의무) 보험계약자는 남한의 공인회계사가 확인(북한 경제특구의 경우 회계검증사무소 또는 세무당국에 제출하였음을 특구관리기관이 확인)한 피투자회사등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를 피투자회사등의 사업년도마다 기금에 제출하고 이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제14조의2(근저당 설정 등의 사전 숭인 요청 의무) 보험계약자는 권리 또는 이를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사전 숭인을 얻어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 등에 보험 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5조(비용의 보전) 보험계약자가 제11조 및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기금이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5장 보험계약 체결

- 제16조(부보율) 부보율은 경제특구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90, 북한 일반지역의 경우 보험가액의 100분의 70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기금이 부보율 범위내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합니다.
- 제17조(보험기간) ① 보험기간은 보험증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매 1년 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금은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 ③ 보험기간 연장신청은 보험기간 종료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통지받은 후 매 투자일 이후 송금 또는 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송금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결산서류를 근거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회계연도 종료일후 6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월(보험계약체결전 투자금액의 경우 보험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을 초과하여 결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증액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증명서류 또는 제2항의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투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액에 투자한 전체 금액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법제처 71 국가법령정보센터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투자증명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 보험계약자에게 FAX 등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⑤ 보험계약체결 숭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체결 숭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제19조(보험계약의 효력 발생)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체결내용에 따라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기금의 보험 책임개시일은 송금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전 기투자분에 대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체결일부터 시작됩 니다.
  - ③ 기금은 보험계약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20조(보험계약의 내용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후 경협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당해 내용변경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재한 소정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기금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기금은 제I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내용을 숭인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은 제I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I월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숭인 또는 해지 방침을 통지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당해 대부등의 상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사업년도 보험기간 개시일 1월전까지 서면으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익년도 보 험료를 받습니다.
- 제21조(보험료 납부 등)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이 정하는 보험료를 보험관계 성립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2회이후 보험료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에 납 부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험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당해 보험료와 그 보험료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제1차 납부기일의 익일로부터 10영업일("제2차 납부기일"이라 함)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중인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 ④ 보험계약자가 제3항의 보험료 및 위약금을 제2차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체결 숭인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숭인의 효력 상실은 보험기간의 I년 또는 그 단수에 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의 개시일부터, 제20조 제2항의 숭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22조(보험료의 환급) ① 보험계약이 무효·취소·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사유에 따라 기금이 받은 보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환급하지 않음(다만, 기금이 당해 보 험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2. 기금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 보험료 전액 환급
- 3. 기금 및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경우 :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
- ② 기금이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계약 내용변경을 숭인함으로써 보험기간이 단축되거나 보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기금에게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의 100분의 90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제6장 보험금 신청 및 지급

- 제23조(사고발생 통지) ① 보험계약자는 제3조의 손실 발생을 안 때에는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I항의 통지내용에는 위험(손실)발생사유, 예상손실액(확정손실액), 손실경감조치내용 등 위험(손실)발생내용과 향후 전망이 충실히 기재되어야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제I항 통지후 위험발생요인이 제거되어 손실발생원인이 소 열된 경우에도 기금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4조(보험금의 지급신청) ①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비용으로 손실을 계산하여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와 함께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지급신청은 제23조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기금은 제24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

- 다. 다만, 기금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상환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기금은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시키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보험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험금지급 책임의 유무 또는 보험금 결정을 위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보험금 지급기한을 제1항에 의한 보험금지급기한에 그 요구한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당해 자료를 전부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을 더한 날로 합니다.
- ③ 기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이하「취급기준」이라 한다.) 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I. 제7조에 의하여 면책 처분한 경우
- 2. 제26조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한 경우
- 제26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5조에 의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보험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은 보험금액의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2. 기타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I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 결과 지급대상이 아

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보험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이 동 내용을 통지하고, 보험계약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7조(비상위험에 의한 사업정지후 보험금 지급 전에 사업이 재개된 경우 처리) 사업재개에 따라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아 손실액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제27조의2(대위권 등의 행사) ①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의 사고권리 등에 관한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고권리 등을 활용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등으로 대위권 행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대위권행사와 그에 갈음하여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하에서 "대위권 등을 행사한다"고 함).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시 기금과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별표6]과 같습니다.
  - ② 기금은 제1항의 대위권 등을 행사하여 보험금(연체금, 비용 등 포함)을 회수합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 ③ 기금은 대위권 등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서 반납기한을 정하여 보험금 반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반납할 보험금은 제5조의 보험금에서 사업정지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제27조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제3항의 반납기한 다음 날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취급기준」 제32조의 연체요 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 ⑥ 보험계약자가 기금이 지정한 기일 이내에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제5항의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는 반납기한 내에 서면으로 기금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반납기한 이후에 사업포기를 통보한경우에는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사업포기 통지일 전일까지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 제7장 채권의 회수

- 제28조(보험금 지급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통지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입금 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에 대한 계산서를 당해 금액의 입 금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하여 보험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

우, 보험계약자는 그 초과지급된 금액과 함께 보험금지급일의 다음날과 제 1항 또는 제2항의 통지시한 만료일 다음날 중 늦은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 지의 날수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29조(보험금 지급후의 회수금)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연체금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증빙 서류를 포함한 회수계산서를 기금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지급받은 보험금을 한도로함)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x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② 보험계약자가 제I항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금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그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취급기준」제32조의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제I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금은 그 금액을 보험계약자와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대위 등에 의한 회수금) ① 제33조 제3항의 보험금 대위 등에 의하여 기금이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회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총회수금액 -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x (1 - 지급받은 보험금/손실액)

- ② 대위권 행사 대상 자산의 처분대금 중 기금에 우선하여 보험계약자의 선순위채권자 및 보험계약자가 배당 또는 지급받은 금액이나 보험계약자 가 납부해야 할 연체금은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은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제31조(사고발생 통지후의 송금불능액 등의 지출) ①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을 통지한 후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 출한 경우에는 당해 지출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봅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제I항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I5 영업일 이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제32조(회수비용의 인정) 제28조 내지 제29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 인 비용이 총회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기금은 그 금액을 한도로 회수비 용을 인정합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33조(채권회수관리 등)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에도 사고권리,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 등에 관한 권리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권리등의 취득금,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득금의 회수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 6월 마다 채권회수 이행상황을 기금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해 권리행사가 곤란하다고 기금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시에 보험계약자가 가지고 있던 당해 사고권리, 송금불능액 또는 송금불능취급금 등에 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계약자는 제3항의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금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증서, 기타 관계서류를 양도하고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기금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34조(기금에 의한 권리의 행사) 기금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사고와 관련된 채권을 스스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당해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제8장 보 취

- 제35조(특약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사항을 약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합의하여 특별약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제36조(서류의 제출) 기금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 서류의 제출을 요 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 최초 사업년도를 제외한 매 회계연도초에 남한의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증명한 피투자회사등의 대차대조표, 기타 결산관계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의 제출확약서

- 2. 기금 또는 기금이 정하는 자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회사등에 대한 실사 또는 확인을 보장하는 피투자회사등 명의의 실사보장각서. 다만, 남한주민이 단독투자한 경우는 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3. 보험금 지급시 기금에 의한 대위권 행사를 보장하는 투자계약상대방 명의 대위권보장각서(합작·합영투자의 경우에 한함). 다만,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지역내 투자의 경우는 대위권보장각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보험금지급신청권 양도) ① 보험계약자는 기금의 동의없이 이 약관 및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② 제I항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신청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보험 금지급신청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 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제38조(이의신청) ① 기금이 이 약관에 의하여 행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기금은 제I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I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39조(적용환율 및 단수절사) ① 이 약관에서 적용하는 환율(당일 수출입은 행이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말함. 이하 같음)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다만, 기금이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1. 권리등의 취득원금 : 보험계약 신청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 2. 제4조의 평가 : 위험발생일 직전 영업일의 환율
- 3. 제4조제2항의 송금불능액, 제4조제3항제1호 이외의 각호의 금액, 제6조의 송금불능취득금, 제20조제3항의 보험금액 감액 또는 제32조의 규정된 금액: 해당금액이 확정된 날의 환율
- 4.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 : 그 금액 이 확정된 날의 환율
- 5. 제28조 내지 제30조에 의한 "회수한 금액, 회수금의 납부액 또는 지급 액": 회수한 날의 환율
- 6. 제I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환산일에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환율이 고 시된 직전일의 환율로 환산
- 7. 원화환율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통화를 매개로 환산
- 8. 제I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환율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금이 지정한 환율로 환산
- ② 이 약관에서 단수절사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 2.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 제40조(절차사항) 기금은 이 약관에 규정된 것 외에 보험계약에 관한 절차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41조(적용법령)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관련법규 및 기타 남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별표6.

# 약 정 서(안)

남북협력기금 관련법규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수탁관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과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4호에 규정된 경제협력사업 보험계약(이하 "경협보험")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회사명](이하 "보험계약자")는 「지분등 투자보험 약관」, 「대부등 투자보험 약관」 또는 「권리등 투자보험 약관」(이하 "경협보험 약관") 제33조 제3항에 따른 기금의 대위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1. 기금이 경협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취득하는 경협보험 약관 제33조 제3항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는 보험계약자가투자한 북한 현지법인(영업소 포함)의 토지이용권, 건물소유권, 등록임차권, 공장의 기계설비 등 저당등록이 가능한 모든 자산에 대하여 기금을 근저당권자, 보험계약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다만, 건설중인 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등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운 자산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금에 대하여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점유를 기금에게 이전한다.
- 2. 본 약정서에 의해 보험계약자는 기금에 대하여 경협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의 지급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변제기는 보험금 지급일과 같은 날로 한다.
- 3.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금 상당의 지급채무, 제10항에 따라 기금이 지출한 비용,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대상 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기금이 지출한 비용 및 연체금 등을 제1항에 따라 설정되는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이하 "피담보채무")로 한다. 피담보채무의 집행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되는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대상 자산의 임의매각 등 방법에 의해서만하며, 보험계약자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실행하지 않기로 한다.

- 4. 제I항에 따라 설정되는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은 각각 제2항에 따른 보험금 상당의 지급채무의 [I30%] 범위 내로 하며, 근저당 권 또는 양도담보권의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한다.
- 5. 기금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계약자의 기금에 대한 근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은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약정 체결시 별첨 근저당권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일 전에 근저당권 등록을 신청하거나(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기금에 양도한다(양도담보권 설정의 경우).
- 6. 보험계약자가 경협보험 약관 제27조의 2에 따른 보험금 반납기한(이하 "반납기한")을 통지받은 후 반납기한까지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기금은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대상 자산의 경매, 제3자에 대한 임의매각 등 기금이 정한 방법에 따른 처분을 통해 괴담보채무를 회수할 수있다. 회수한 괴담보채무 중 기금이 대상 자산 처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경협보험 약관 제30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대상자산의 처분대금 중 기금에 우선하여 보험계약자의 선순위채권자 및보험계약자가 배당 또는 지급받은 금액, 제9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연체금 등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약관 제30조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가지급받은 금액으로 간주한다.
- 7. 기금은 제6항에서 정한 반납기한이 경과한 이후 위 5항에 따라 근저당 권 또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대상 자산을 제6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 8. 기금은 제6항에 따른 대상 자산의 처분금액이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다.
- 9. 보험계약자는 피답보채무를 반납기한 내에 기금에 변제한 후 근저당권 또

는 양도담보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말소를 위하여 기금에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근저당권 등 말소절차 등에 관하여 추후 기금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보험계약자가 반납기한 내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사업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기금은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반납일 또는 사업포기의 통지일 전일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제 32조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부과한다.

- 10.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을 보험계약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이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금이 이를 유지·관리하고 유지·관리비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II. 근저당권 또는 양도담보권 대상 자산의 국내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처분, 양도 등 포함) 경협보험 약관 제29조에 따른 회수금으로 처리한다.
- 12. 기금과 보험계약자는 서면으로 본 약정서에 대한 수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 13. 본 약정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 14. 본 약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 경협 보험 약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및 개성공업지구 부동 산규정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1 1 1 1 1 1

기금 한국수출입은행장 보험 [회사명] [주소] 계약자 [주소]

[성명] (인) [대표자 성명] (인)

별첨 : 근저당권(양도담보) 설정계약서 I부, 끝,